(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조합원 모집개요

◆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계약 착오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불이익 및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북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원에 대한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가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공고는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 합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공고이며, 본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시행 하는 사업으로 사업진행 및 사업무산, 사업진행 지연 등 모든 책임은 조합원 당사자에게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의 사업예정지는 부산 북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원이며,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합원 모집주체 · 조합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가. 조합원 모집주체

구분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모집 주체	추진위원회	고유번호 219-82-64375	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김대중	부산시 북구 덕천동 350-1
	업무대행사	법인등록번호 124411-0292144	(주)인트로디앤씨	김재건	부산광역시 북구 구남언덕로20번길 14 (구포동)
자금관리신탁사		법인등록번호 110111-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이창하 이창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삼성동 삼성금융플라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를 수행할 업체입니다.

나. 조합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구분	성명	주소
추진위원장	김대중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30번길 30, 402호(금곡동,트윈파크)
추진위이사	이홍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522, 3층 (신길동)
추진위이사	김부철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326번길 31, e편한세상 403동 1204호
추진위이사		

다.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

대지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23-119번지 일원
대지 지목 지역 지구	총 면적 43,481㎡ / 실사용 사업부지 36,626㎡ (124필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현황	사유지 39,201㎡, 국공유지 4,280㎡
대지 지목	대(대지), 도(도로), 임(임야)
토지확보 현황	20.1%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본	부번			
923	1	도	3,951	2,642
923	2	대	175	175
923	3	대	283	283
923	4	대	255	255
923	7	대	175	175
923	8	대	185	185
923	9	대	162	162
923	10	대	152	152
923	13	대	179	179
923	14	대	132	132
923	15	대	166	166
923	16	대	149	149
923	17	대	492	492
923	18	도	16	16
923	28	도	14	14
923	29	도	15	15
923	34	대	169	169
923	35	대	149	149
923	36	대	142	142
923	37	대	136	136
923	38	대	149	149
923	39	대	172	172
923	40	대	169	169
923	41	대	129	129
923	42	대	118	118
923	43	대	136	136
923	44	대	136	136
923	45	대	182	182
923	46	대	264	264
923	47	대	96	96
923	48	대	179	179
923	49	대	182	182
923	50	대	255	255
923	51	대	202	202
923	52	대	224	224
923	53	대	169	169
923	54	대	179	179
923	55	대	126	126
923	103	대	96	96
923	110	대	166	166
923	111	대	165	165
923	112	대	164	164
923	114	도	14	14
923	117	대	65	65
923	119	대	18,892	18,892
923	120	도	4,116	2,329
923	123	도	31	31
923	124	도	29	29
923	125	대	156	156
923	126	대	156	156
923	127	대	151	151
923	136	대	195	195
923	137	도	23	23
923	138	대	225	225
923	139	대	188	188
923	140	대	144	144
923	144	도	13	13
923	198	도	9	9
923	199	도	20	20
1075	2	전	113	113
1075	3	전	248	248
1075	6	임	917	80
1075	7	임	503	503
1075	20	대	146	146
1075	21	대	158	158
1075	22	대	144	144
1075	23	대	134	134
1075	24	대	140	140
1075	25	대	152	152
1075	26	대	152	152
1075	27	대	154	154
1075	28	대	199	199
1075	29	대	198	198
1075	30	대	133	133
1075	32	도	38	38
1075	33	대	136	136
1075	34	대	136	136
1075	35	대	140	140
1075	36	대	142	142
1075	37	대	150	150
1075	38	대	158	158
1075	40	대	163	163
1075	41	임	94	94
1075	42	대	166	166
1075	43	대	150	150
1075	47	대	167	167
1075	48	대	155	155
1075	49	대	155	155
1075	50	대	167	167
1075	51	대	167	167
1075	52	대	155	155
1075	53	대	152	152
1075	54	대	164	164
1075	55	대	152	152
1075	56	대	152	152
1075	57	대	154	154
1075	58	대	154	154
1075	59	대	154	154
1075	60	대	154	154
1075	61	대	154	154
1075	62	대	154	154
1075	63	대	154	154
1075	64	대	154	154
1075	65	대	156	156
1075	66	대	152	152
1075	67	대	152	152
1075	77	대	136	136
1075	80	대	152	152
1075	81	대	136	136
1075	82	대	146	146
1075	83	대	134	134
1075	85	임	11	11
1075	87	도	48	48
1075	88	대	146	146
1075	89	대	152	152
1075	90	도	46	46
1075	91	대	142	142
1075	92	대	152	152
1075	94	대	170	170
1075	95	대	154	154
1075	96	대	160	160
1075	99	대	151	151
1075	100	대	135	135
1076	2	도	4,039	1,819

※ 토지확보 예정비율 : 창립총회전까지 사유지 80%이상 토지 사용승락서와 조합 설립 신청전까지 토지매매 80%이상 확보계획

※ 상기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위치 및 대지면적은 조합추진위원회사무실 또는 업무대행사 및 주택홍보관에 전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건설사업 예정세대수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비주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전용면적	59㎡	75㎡	84A㎡	84B㎡	계
세대수	431	88	202	186	907세대

※ 상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는 인허가과정(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주택타입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59㎡	59.87	23.82	83.69	38.91	122.60	31.5171㎡	431
75㎡	75.50	29.85	105.35	49.08	154.43	39.7478㎡	88
84A㎡	84.44	31.94	116.38	54.89	171.27	44.4523㎡	202
84B㎡	84.92	33.98	118.90	55.20	174.10	44.7039㎡	186

※ 상기 주택공급면적 등은 인허가과정(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치수로 산정하였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비주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시설명 및 면적(㎡)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79.50㎡, 경비실 : 62.40㎡, MDF실 : 77.47㎡
복리시설	옥외시설	어린이놀이터 : 1,107.00㎡, 주민운동시설 : 750.00㎡
	옥내시설	경로당 : 140.70㎡, 어린이집 : 323.25㎡, 작은도서관 : 219.23㎡, 주민운동시설 : 2,244.94㎡

※ 상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은 인허가과정(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모집내역 및 자격조건

가. 조합원 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전용면적	59㎡	75㎡	84A㎡	84B㎡	계	모집세대	모집기간
모집 세대수	431	88	202	186	907	730	모집공고일로부터 2023. 06. 30.까지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과정(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454세대)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2차 추가조합원 모집 신고 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잔여 세대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분양 할 수 있으며,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나. 조합원 자격조건 및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 자격조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주민등록기준)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3.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4.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 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조합원의 권리 · 의무사항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 1세대 공급 청구 권리 2.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행사 권리 3.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 행사 권리 4. 조합원분담금 및 제세공과금 개별납부 의무 5.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 상기 내용외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 모집 시, 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없이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조합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조합원자격(거주지역, 무주택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은 조합가입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조합원 당첨자 발표 및 동 · 호수 배정방법

당첨자 발표 및 동 · 호수 배정방법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 예정자로 확정된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한 당첨자 선정 및 군 배정 – 각 군별로 포함된 주택형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군 배정을 동시에 발표 : 59㎡, 75㎡, 84A㎡, 84B㎡

※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규약에서 정한 시기 또는 조합 및 업무대행사 및 시공사가 협의한 지정한 시기에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되, 추첨방식 외에도 조합원 가입순서 및 조합원 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조합원에 우선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 등 세부적인 공급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선착순 동·호수를 임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변경에 따라 동·호수 배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당첨자 발표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별 안내 합니다.

라. 조합원가입 계약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계약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번호 기재) 4통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내역 5년이내 포함) 4통, 5. 가족관계증명서 4통 6. 인감증명서 14통(신탁사 제출용 등) 7. 일반도장(조합제출용) 8. 배우자 등본 4통(부부 분리세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통
계약기간 일시 및 장소	1. 계약 기간: 조합원 모집신고 완료 후부터 2. 업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홍보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0-1번지 주택홍보관 또는 조합사무실

마.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가입계약서 상의 권리 상실을 포함하여, 이하 동일)된다.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법령, 조합규약 및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단, 계약의 해제(지)로 인한 환급 시 조합원이 기 납입한 업무대행비, 연체 이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신탁 등기(변경)비, 연체료,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한 후 조합원 본인의 통장 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단, 신청금, 계약금 및 조합설립 인가 시 자납분의 경우 1회 이상 미납 시)
3. 이중 당첨 및 적합하지 못한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견됐을때
4.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조합이 판단하여 주택 조합에 공동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6.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7. 조합원 총회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8. 기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규정한 협약 등에 불응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9. 계약 및 조합 규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10.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자격 상실, 관할 관청의 조합인가 신청 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11. 조합원 사망 또는 인·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 다만,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분담금을 기일 내에 성실히 납입하고 본 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에 조합 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외의 방법에 의한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 상기 내용에 의거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는 위약금으로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조합원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가. 조합원 분담금

(단위 : 천 원)

타입	평형	모집군	층	모집세대수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토지분담금(10%)		중도금 대출(60%) – 중도금대출 실행시 대출기관과 협의된 일정 기준에 의함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조합원 분담금 납부총액	계약시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조합총회 후(5%)	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5%)	10%	10%	10%	10%	10%	10%	
59 TYPE	25.32	가	1	431	212,500	5,000	20,000	8,750	8,750	21,250	21,250	21,250	21,250	21,250	21,250	42,500
		나	2~3		225,000	5,000	20,000	10,000	10,0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22,500	45,000
		다	4~6		240,000	5,000	20,000	11,500	11,5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48,000
		라	7~10		250,000	5,000	20,000	12,500	12,5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50,000
		마	11~15		265,000	5,000	20,000	14,000	14,000	26,500	26,500	26,500	26,500	26,500	26,500	53,000
		바	16~20		280,000	5,000	20,000	15,500	15,5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56,000
		사	21~25		285,000	5,000	20,000	16,000	16,0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57,000
		아	26~29		297,500	5,000	20,000	17,250	17,250	29,750	29,750	29,750	29,750	29,750	29,750	59,500
		자	30~33		305,000	5,000	20,000	18,000	18,0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61,000
		차	34~35		310,000	5,000	20,000	18,500	18,5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62,000
75 TYPE	31.87	가	1	88	278,500	5,000	23,000	13,850	13,850	27,850	27,850	27,850	27,850	27,850	27,850	55,700
		나	2~3		303,300	5,000	23,000	16,330	16,330	30,330	30,330	30,330	30,330	30,330	30,330	60,660
		다	4~6		318,800	5,000	23,000	17,880	17,880	31,880	31,880	31,880	31,880	31,880	31,880	63,760
		라	7~10		325,000	5,000	23,000	18,500	18,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65,000
		마	11~15		340,500	5,000	23,000	20,050	20,050	34,050	34,050	34,050	34,050	34,050	34,050	68,100
		바	16~20		349,800	5,000	23,000	20,980	20,980	34,980	34,980	34,980	34,980	34,980	34,980	69,960
		사	21~25		356,000	5,000	23,000	21,600	21,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71,200
		아	26~29		371,500	5,000	23,000	23,150	23,150	37,150	37,150	37,150	37,150	37,150	37,150	74,300
		자	30~33		380,800	5,000	23,000	24,080	24,080	38,080	38,080	38,080	38,080	38,080	38,080	76,160
		차	34~35		387,000	5,000	23,000	24,700	24,700	38,700	38,700	38,700	38,700	38,700	38,700	77,400
84 A TYPE	35.21	가	1	202	314,000	5,000	25,000	16,400	16,400	31,400	31,400	31,400	31,400	31,400	31,400	62,800
		나	2~3		345,500	5,000	25,000	19,550	19,550	34,550	34,550	34,550	34,550	34,550	34,550	69,100
		다	4~6		363,000	5,000	25,000	21,300	21,3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72,600
		라	7~10		370,000	5,000	25,000	22,000	22,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74,000
		마	11~15		387,500	5,000	25,000	23,750	23,750	38,750	38,750	38,750	38,750	38,750	38,750	77,500
		바	16~20		398,000	5,000	25,000	24,800	24,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79,600
		사	21~25		405,000	5,000	25,000	25,500	25,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81,000
		아	26~29		422,500	5,000	25,000	27,250	27,250	42,250	42,250	42,250	42,250	42,250	42,250	84,500
		자	30~33		433,000	5,000	25,000	28,300	28,300	43,300	43,300	43,300	43,300	43,300	43,300	86,600
		차	34~35		440,000	5,000	25,000	29,000	29,000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88,000
84 B TYPE	35.97	가	1	186	314,000	5,000	25,000	16,400	16,400	31,400	31,400	31,400	31,400	31,400	31,400	62,800
		나	2~3		345,500	5,000	25,000	19,550	19,550	34,550	34,550	34,550	34,550	34,550	34,550	69,100
		다	4~6		363,000	5,000	25,000	21,300	21,3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36,300	72,600
		라	7~10		370,000	5,000	25,000	22,000	22,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74,000
		마	11~15		387,500	5,000	25,000	23,750	23,750	38,750	38,750	38,750	38,750	38,750	38,750	77,500
		바	16~20		398,000	5,000	25,000	24,800	24,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39,800	79,600
		사	21~25		405,000	5,000	25,000	25,500	25,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81,000
		아	26~29		422,500	5,000	25,000	27,250	27,250	42,250	42,250	42,250	42,250	42,250	42,250	84,500
		자	30~33		433,000	5,000	25,000	28,300	28,300	43,300	43,300	43,300	43,300	43,300	43,300	86,600
		차	34~35		440,000	5,000	25,000	29,000	29,000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88,000

※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사업계획,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조합원분담금 일정표는 조합원 모집에 따른 내역입니다.

※ 상기 각 주택형별, 동별, 층별 기재사항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입 기재사항은 주거전용면적만 표기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조합원분담금은 층별, 향별, 동별 차등적용된 것이며, 향후 각종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 중 사업계획(설계,구조변경 포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분담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 등기비,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은 개별부담으로 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면적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사용검사 전 확정측량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조합원 분담금액은 조합업무대행비 [59타입 1,500만원 / 75타입 1,700만원 / 84타입 2,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일반(임의)분양 할 예정입니다

나.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입금자란 표시내용
신청(청약)금	우리은행	1005-004-186100	우리자산신탁(주)	전용면적 + 본인이름 기재 (예 : 전용면적 타입이 59㎡에 본인 이름이 홍길동인 경우 59 홍길동으로 기재)
조합원 분담금	우리은행	1005-404-179094	우리자산신탁(주)	
업무대행비	우리은행	1005-604-180097	우리자산신탁(주)	

※ 조합원분담금 일정은 조합원 가입 신청 후 별도 고지합니다.

※ 조합원신청금, 조합원분담금은 상기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직접 납부하며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자금관리신탁사(우리자산신탁)"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조합이사회의 결의와 행정업무대행사 날인을 첨부하여 자금신탁에 자금인출 요청을 신청하고 자금신탁사는 근거서류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자금을 집행한다

다. 조합원 신청금 및 신청방법

구 분	조합원 신청 접수기간	신청방법	조합원 신청금액	신청장소	영업시간
부산구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모집공고일로부터 2023.06.30.까지	홍보관 내 현장접수	전 주택형 500만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0-1번지 주택홍보관	오전10:00부터 오후 6:00까지

※ 상기 신청금은 정식 계약 전 신청금으로 정식 계약 시 1차 계약금으로 합산합니다.

※ 상기 신청금은 조합원 가입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대리인 입금시 유선통보 바람)

※ 조합원신청금 납입에 따른 기간이자는 없습니다.

5. 사업일정(예정일)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 착공예정일 · 입주예정일

구 분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예정일	2022년 8월 예정	2023년 8월 예정	2024년 10월 예정	2027년 12월 예정

※ 상기 사업일정은 인허가과정(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관련 사업(모집)주체의 주택홍보관의 견본, 각종 광고, 홍보물 등의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써 인허가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사항은 인허가 완료 후 확정됩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 동 표시 및 번호, 외부색체와 그래픽은 심의 또는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또는 계약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반드시 설계도면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 및 그 밖의 광고, 홍보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일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환경여건, 도로여건 등 주변환경을 확인하고 신청,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지내에 (예비)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에서 공급하는 세대의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합원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조합원모집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인허가과정(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사업부지, 건축규모, 단지배치 및 세대별 공급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조합의 총회를 거쳐 조합원 부담금이 가감 조정될 수 있고 조합원은 이에 동의하여 부담금 차가납부 또는 환급 방법을 조합의 이사회에 위임하며 조합은 이사회에서 변경내역을 확정하여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합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가입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공사 등 사업의 일체를 조합원 책임 하에 운영되는 사업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이후에 명시되지 않은 유의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조합원신청서, 계약서, 조합에서 작성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관 및 가입신청장소

- 홍보관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0-1번지 주택홍보관
- 모 집 문 의: 051-341-3333
- 사 업 주 체

추 진 위	업 무 대 행 사	자 금 관 리 신 탁 사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대표 : 김대중	(주)인트로디앤씨 대표 : 김재건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 이창하, 이창재

※ 본 조합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 및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지확보계획

토지전수조사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부동산 매매계약	비고
2021.08.03. ~ 사업완료 시	2021.08.03. ~ 사업완료 시	2021.08.03. ~ 사업완료 시	대지면적 : 43,481㎡ 사유지 : 39,201 ㎡ 국공유지 : 4,280 ㎡